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 안 번 호 2182 제출연월일: 2024. 7. 24.

제 출 자:정 부

제안이유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나 제품이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되어 우리나라 신산업을 견인할 수 있도록, 종전에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지정받거나 임시허가를 받은 신기술 또는 신기술 서비스 · 제품과 내용 · 방식 · 형태 등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 신청이 있을 경우 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관계 공무원이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부여, 관리·감독 등 관련 업무를 적극적·능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표창수여 및 포상금 지급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유사·동일과제 신속처리절차 마련(안 제16조의2제7항 및 제16조의7 제7항 신설)

종전에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실증을 위한 규제특

례를 지정받거나 임시허가를 받은 신기술 또는 신기술 서비스·제품과 내용·방식·형태 등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 신청이 있을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검토결과 회신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단축하고, 그 검토결과를 포함한 신청 내용에 대한 심의·의결은 전문위원회에서 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신청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나.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안 제71조의2 신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부여, 관리·감독 등 관련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감사원법」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하도록 함.

다. 표창 수여 및 포상금 지급 근거 마련(안 제71조의3 신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신기술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게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법률 제 호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⑦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종전에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지정받거나 임시허가를 받은 것과 내용·방식·형태 등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신기술 또는 신기술 서비스·제품에 대한 실증을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에 관한 사항의 심의
- 2. 제1항제6호의2에 관한 위원회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6조의2제7항부터 제16항까지를 각각 제8항부터 제1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10항) 본문 중 "제2항부 터 제6항까지"를 "제2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13항(종전의 제12항) 중 "제11항"을 "제1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5항(종전의 제14항) 중 "제12항"을 "제13항"으로, "제13항"을 "제1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6항(종전의 제15항) 중 "제11항"을 "제12항"으로. "제12항부터 제14 항까지"를 "제13항부터 제1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17항(종전의 제 16항) 중 "제1항부터 제15항까지"를 "제1항부터 제16항까지"로 한다.

-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의 내용이 종전에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실증특례를 지정받거나 임시허가를 받은 신기술 또는 신기술 서비스·제품의 내용·방식·형태 등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제3항, 제5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 1. 제5항에 따른 관계기관의 장의 검토결과 회신기간: 15일 이내로 단축
- 2. 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위원회에 상정 및 위원회의 심의·의결: 전 문위원회에 상정 및 전문위원회의 심의·의결
- ⑧ 실증특례의 신청이 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에서 부결되어 제3항전단에 따른 실증특례 지정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인은 대통령령으로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실증특례의 지정 여부를 다시 결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 1. 위원회에서 부결된 신청인의 경우: 위원회의 재심의ㆍ의결
- 2. 전문위원회에서 부결된 신청인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 제16조의3제3항 중 "제16조의2제11항"을 "제16조의2제1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후단 중 "제16조의2제12항 및 같은 조 제13항"을 "제16조

의2제13항 및 같은 조 제1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16조의2제 11항"을 "제16조의2제12항"으로 한다.

제16조의5제1항제3호 중 "제16조의2제16항"을 "제16조의2제17항"으로 한다.

제16조의7제7항부터 제15항까지를 각각 제8항부터 제1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4항(종전의 제13항) 본문 중 "제12항"을 "제1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6항(종전의 제15항) 중 "제1항부터 제14항까지"를 "제1항부터 15항까지"로 한다.

-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의 내용이 종전에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실증특례를 지정받거나 임시허가를 받은 신기술 또는 신기술 서비스·제품의 내용·방식·형태 등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제3항, 제4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 1. 제3항에 따른 관계기관의 장의 검토결과 회신기간: 15일 이내로 단축
- 2. 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위원회에 상정 및 위원회의 심의·의결: 전 문위원회에 상정 및 전문위원회의 심의·의결

제16조의8제1항제4호 중 "제16조의7제10항"을 "제16조의7제11항"으로 한다.

제56조제3호 중 "제16조의2제9항"을 "제16조의2제10항"으로 한다. 제71조의2 및 제7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71조의2(적극행정 면책 특례) 제16조의2, 제16조의3, 제16조의6 및 제16조의7에 따른 업무를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원법」 제34조의3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 제71조의3(포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신기술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게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3조제4호 중 "제16조의2제9항"을 "제16조의2제10항"으로 한다. 제76조제2항제7호 중 "제16조의7제13항"을 "제16조의7제14항"으로 한다.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1조의2 및 제71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절차 간소화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제7항 및 제16조의7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제16조의2제1항 또는 제16조의7제1항에 따라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아 혂 개 정 제7조(연구개발특구위원회) ① ~ | 제7조(연구개발특구위원회) ① ~ ⑥ (생략) ⑥ (현행과 같음) ⑦ 제1항제6호의2에 관한 위원 ⑦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 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 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바에 따라 위원회에 전문위원회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전 (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둔다. 1. 종전에 위원회의 심의 • 의결 을 거쳐 실증을 위한 규제특 례를 지정받거나 임시허가를 받은 것과 내용・방식・형태 등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신기술 또는 신기술 서비스 · 제품에 대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에 관한 사항의 심의 2. 제1항제6호의2에 관한 위원 회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ㆍ지 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6조의2(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제16조의2(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① ~ ⑥ (생 략) ①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의 내용이 종 전에 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

⑦ 실증특례의 신청이 제6항에 따른 위원회에서 부결되어 제3항 전단에 따른 실증특례 지정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실증특례의 지정 여부를 다시 결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처 실증특례를 지정받거나 임시 허가를 받은 신기술 또는 신기 술 서비스・제품의 내용・방식 ·형태 등과 실질적으로 동일하 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제3항, 제5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절차 를 간소화할 수 있다.

- 1. 제5항에 따른 관계기관의 장의 검토결과 회신기간: 15일이내로 단축
- 2. 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위원 회에 상정 및 위원회의 심의 ·의결: 전문위원회에 상정 및 전문위원회의 심의·의결
- ⑧ 실증특례의 신청이 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에서 부결되어 제3항 전단에 따른 실증특례 지 정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실증특례의 지정 여부를 다시 결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 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 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

⑧・⑨ (생략)

① 제3항에 따라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제4항 후단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라 한다)가 지정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실증특례의 변경을 신청할수 있으며,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하여 변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u>(1)</u> (생 략)

② 관계기관의 장은 <u>제11항</u>에따라 제출된 실증특례의 적용

| 1. 위원회에서 부결된 신청인의 |
|------------------------------------|
| 경우: 위원회의 재심의ㆍ의결 |
| 2. 전문위원회에서 부결된 신청 |
| 인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 |
| <u>결</u> |
| <u>⑨</u> ・ <u>⑩</u> (현행 제8항 및 제9항과 |
| 같음) |
| <u> </u> |
| |
| |
| |
| |
| |
| |
| |
| |
| <u>제2항부터 제7</u> |
| <u>항까지</u> |
| |
| |
| |
| <u>.</u> |
| ◎ (현행 제11항과 같음) |
| <u> ③</u> <u>제12항</u> |
| |

여야 한다.

결과를 바탕으로 실증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의 정비 필요 여부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고, 해당 신기술의안전성 등이 입증되어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즉시 법령 정비에 착수하여야한다.

<u>③</u> (생 략)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기관의 장이 제12항 또는 제16조의3제4항에 따라 법령 정 비에 착수한 경우(제13항에 따 른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 쳐 관계기관의 장이 법령 정비 에 착수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 른 법률에 따라 금지되는 것이 명확하지 아니하면 해당 신기 술 서비스・제품에 대하여 제16 조의7에 따른 임시허가를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11항에 따른 요청을 한 자는 제12항부터 제14항까지의 절차에 필요한 기간 동안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것으로

| <u>④</u> (현행 제13항과 같음) |
|------------------------|
| <u>15</u> |
| <u>제13항</u> |
| |
| <u>ঝ14</u> ছ <u>ী</u> |
| |
| |
| |
| |
| |
| |
| |
| |
| <u>⑯</u> <u>제12</u> 항 |
| <u>제13항</u> |
| <u>부터 제15항까지</u> |
| |
| |

본다. 16 제1항부터 제15항까지에서 ① 제1항부터 제16항까지----규정한 사항 외에 실증특례의 신청 및 세부 심사기준 등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제16조의3(실증특례의 관리 및 감 제16조의3(실증특례의 관리 및 감 독 등) ① · ② (생 략) 독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 (제16조의2제11항에 따라 법령 --제16조의2제12항----정비를 요청한 자는 제외한다) 는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실증특례의 적용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 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④ 관계기관의 장은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관계 법령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 판단하거나 제3항에 따라 제 출된 적용 결과를 검토한 결과

관계 법령의 정비 필요성이 있

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법령을

정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령

정비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는

제16조의2제12항 및 같은 조 제 13항을 준용한다.

-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특구 내 신기술 및 연 구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제3항 및 제16조의2제11항에 따른 실 증특례의 적용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 ⑥ ~ ⑨ (생 략)

제16조의5(실증특례 지정의 취소) 저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실 증특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 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2. (생략)
 - 3. <u>제16조의2제16항</u>에 따른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 4. (생략)
 - ② ~ ④ (생 략)

제16조의7(임시허가의 신청 등) 지

| 제16조의2제13항 및 같은 조 제 |
|----------------------|
| <u>14항</u> |
| 5 |
| |
| |
| 제16조의2제12항 |
| |
| |
| ⑥ ~ ⑨ (현행과 같음) |
| 세16조의5(실증특례 지정의 취소) |
| ① |
| |
| |
| |
| |
| |
| |
| · |
| |
| · 1.•2. (현행과 같음) |
| , _ , . |
| 3. <u>제16조의2제17항</u> |
| |
| |
| 4. (현행과 같음) |
| ② ~ ④ (현행과 같음) |
| 세16조의7(임시허가의 신청 등) |

① ~ ⑥ (생 략) <신 설>

⑦ ~ ⑫ (생 략)

① 임시허가를 받은 자는 <u>제12</u> 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이행 하기 위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 여야 한다. 다만, 책임보험에 가 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

- ① ~ ⑥ (현행과 같음)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의 내용이 종전에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실증특례를 지정받거나 임시하가를 받은 신기술 또는 신기술 서비스·제품의 내용·방식·형태 등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제3항, 제4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 1. 제3항에 따른 관계기관의 장의 검토결과 회신기간: 15일이내로 단축
- 2. 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위원 회에 상정 및 위원회의 심의 ·의결: 전문위원회에 상정 및 전문위원회의 심의·의결
- <u>⑧</u> ~ <u>③</u> (현행 제7항부터 제12 항까지와 같음)

| <u>(14)</u> | - <u>제13항</u> |
|-------------|-------------------|
| | |
| | |
| | |

| 령으로 정하는 배상 기준・ | 방법 |
|----------------|----|
| 및 절차 등에 따라 별도의 | 배상 |
| 방안을 마련한다. | |

- ④ (생 략)
- 15 제1항부터 제1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청 및 심사기준 등 임시허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6조의8(임시허가의 취소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6조의7제4항에 따라 임시허
 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그 임시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시허가
 를 취소하여야 한다.
 - 1. ~ 3. (생 략)
 - 4. 제16조의7제10항을 위반하여 허가등을 받지 아니한 경우
 - 5. (생략)
 - ② ~ ⑤ (생 략)
- 제56조(비밀누설 등의 금지) 위원 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 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u>ⓑ</u> (현행 제14항과 같음) |
|---|------------------------|
| | <u>⑯</u> 제1항부터 제15항까지 |
| | |
| | |
| | |
| 제 | 16조의8(임시허가의 취소 등) |
| |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3. (현행과 같음) |
| | 4. <u>제16</u> 조의7제11항 |
| | |
| | 5. (현행과 같음) |
| | ② ~ ⑤ (현행과 같음) |
| 제 | 56조(비밀누설 등의 금지) |
| | |
| | |
| | |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 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 (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2. (생략)
- 3. 제16조의2제9항에 따른 시험 •검사기관의 임직원 또는 임 직원이었던 사람

<신 설>

<신 설>

제7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 제7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 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1. · 2. (현행과 같음) 3. 제16조의2제10항-----

제71조의2(적극행정 면책 특례) 제16조의2, 제16조의3, 제16조 의6 및 제16조의7에 따른 업무 를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 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 실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원 법」 제34조의3 및 「공공감사 에 관한 법률 : 제23조의2에 따 라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제71조의3(포상) 과학기술정보통 신부장관은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신기술 관련 산업 활 성화에 기여한 자에게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 -----

| 아닌 | 사람, | 다음 : | 각 호의 | 네 어느 |
|-----|------|------------|------|------|
| 하나여 | 게 해 | 당하는 | 사람은 | - 「형 |
| 법」 | 제129 | 9조부터 | 제132 | 조까지 |
| 의 규 | 정을 | 적용할 | 때에는 | 는 공무 |
| 원으 | 로 본1 | 구 . | | |

- 1. ~ 3. (생략)
- 4. <u>제16조의2제9항</u>에 따른 시험
 - 검사기관의 임직원

제76조(과태료) ① (생 략)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 6. (생략)
- 7. 제16조의7제13항을 위반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같은 항 단서에 따라 별도 의 배상방안을 마련한 경우는 제외한다)
- 8. 9. (생략)
- ③ ④ (생 략)

| <u>.</u> |
|--------------------------|
| 1. ~ 3. (현행과 같음) |
| 4. 제16조의2제10항 |
| |
| 제76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
| ② |
| |
| |
| 1. ~ 6. (현행과 같음) |
| 7. 제16조의7제14항 |
| |
| |
| |
| |
| 8.•9. (현행과 같음) |
| ③·④ (현행과 같음) |
| い、は (1 で イ 乍 〒 / |

[별지 제1호서식]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 연번 | 조·항(조제목) | 주요내용 |
|----|------------|--|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신기술 관련 |
| 1 | 제71조의3(포상) | 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 대해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
| | | 있다. |

Ⅱ.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 연번 | 조·항(조제목) | 미첨부 근거 규정 | |
|----|------------|--|--|
| 1 | 제71조의3(포상) | 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0억 미만 - 포상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경우로, 추가적인 재정 지출이 수반되지 않음 - 추후 포상금을 지급을 추진하더라도 그 예산은 소액임 | |

2. 상세 사유

- 제71조의3(포상)은 신기술 실증 또는 제품·서비스 개발을 통해 신기술의 사업화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게 포상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경우로, 추가적인 재정지출이 반드시수반되지는 않음. 추후 포상금 지급을 추진하더라도 그 예산은 소액임
 - ※ 포상금 지급 예시 : 과기정통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포상금 액수를 준용하여, 1명당 1,000,000원, 연 2명을 포상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연평균 비용은 소액에 불과함

Ⅲ. 부대의견

O 해당 없음

Ⅳ. 작성자

O 성명

| 주무관 | 사무관(서기관) | 과장 | 국장 |
|-----|----------|-----|----|
| _ | 이미정 | 고정호 | - |

O 대표연락처

| 성명 | 전화번호 | 이메일 주소 |
|-----|--------------|------------------|
| 이미정 | 044-202-4717 | already@korea.kr |